

법학전문대학원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2021.11.

1. 운영목적

- ▶ 현장 경험을 통해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구현
- ▶ 법실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달성하게 하여 졸업 후 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
- ▶ 실습과정에서 체득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공익법률가의 자세와 자질을 갖춤

2. 실무실습과정 기대효과

- ▶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실무 적응능력 제고
-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인턴십 등을 통해 사회봉사의 체험 기회 부여

3. 실습과정 운영 기본원칙

○ 실습과정의 체계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은 이론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현장에서의 **80시간의 실무실습 및 법률봉사활동을 마치고 「실습과정」 과목 수강**으로 연계되는 교과과정이다.

선수과목 이수	현장실습	「실습과정」 과목수강
민법1 형법1 민사소송법1 형사소송법1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작성 ¹⁾	<p>1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이수 가능하며,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필수실습 기관에서 80시간의 실습을 완료해야 함</p> <p>▶ 법률봉사활동</p> <p>실습기간 중 최소 2회 또는 2시간 이상 법률봉사활동³⁾ 참여</p>	<p>▶ 2학년 2학기²⁾에 의무적으로 수강을 종료하여야 함</p>

1) 원칙적으로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법문서의작성을 제외한 모든 선수과목은 1학년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수하는데 아무 문제 없음. 따라서 1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실습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법문서의작성을 이수하여야 함. 2학년 1학기에 법문서의작성을 듣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실습나가는 것이 일반적임.

2) 실습과정은 2학기에만 개설됨. 따라서 2학년 2학기에 모두 실습과정을 수강하여야 함.

3) 수원지방법원 또는 경기도청의 무료법률상담 참여, 그림자배심 참여 등

○ 필수실습 기관의 범위

실습 인정 기관(필수실습 기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실습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

- 그 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학교에서 공지한 기관 또는 개인 섭외)

※ 개인이 섭외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추가 확인서의 징구를 요청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 상기 기관 외에 실습기획총괄교수가 실습 전에 승인한 기관

(실습기관 인정 신청서를 교학팀을 통하여 실습기획총괄교수에게 제출하여 실습 개시 전에 승인을 얻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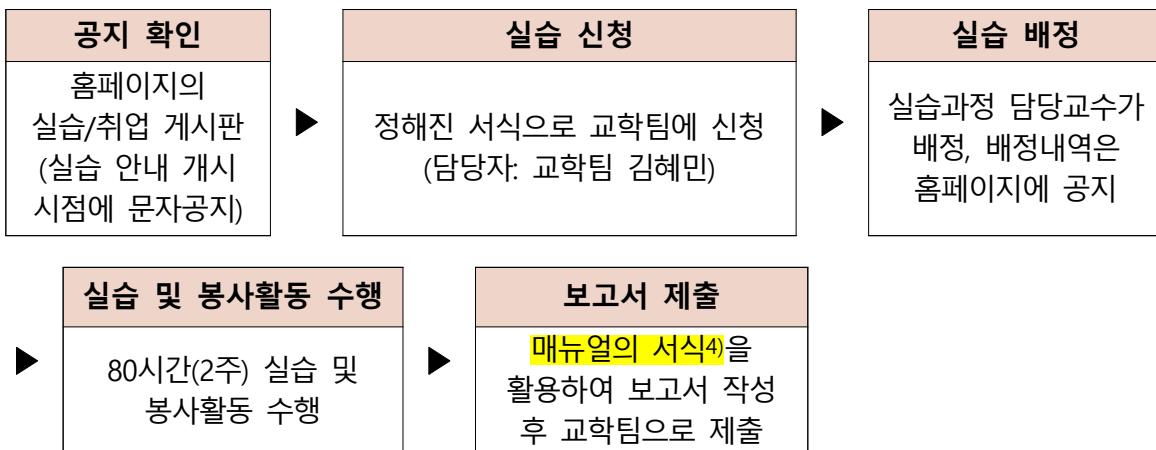
* 해외 기관에서의 실습 및 상기 기관 외에서의 실습은 필수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기관 외의 선택실습은 희망에 따라 수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개인 섭외 기관의 필수실습 인정 여부 및 '실습기관 인정 신청서' 관련 내용은 별도 문의

- 담당자 : 교학팀 김혜민(khm219504@ajou.ac.kr, T.031-219-3752)

4. 실습과정 참가 절차



* 실습보고서 서식은 매뉴얼을 활용하되, 실습기관 자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실습 수행 중 지도받고자 하는 사항이 생기면 「실습과정」 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

5. 실습보고서 제출 및 「실습과정」 과목 수강

- ▶ 현장에서의 80시간의 실무실습을 마치고 작성한 실습보고서는 공지된 기한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 ▶ 향후 「실습과정」 수업에서 실습 케이스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이 때 발표하는 케이스는 사례와 경험이 타 수강생들과 공유할만한 내용이어야 함.

4) 서식을 면밀히 살펴서 매뉴얼에 따라 결과물을 철해서 제출하기 바람. 필수제출서류(문서 개수까지 확인) 미비의 경우 대체보고서 등 작성하여 담당기관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